

## 의과대학 학생코호트위원회 운영규칙

제정 2022. 7. 13.

**제 1 조(목적)** 이 규칙은 의과대학장(이하 “학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코호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의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구축에 관한 주요사항
2. 의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
3. 의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코호트 자료의 분석에 관한 사항
4. 의학과 사명 및 졸업성과와 코호트 결과간의 연계성 분석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 3 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-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③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 4 조(위촉 및 임기)** ① 위원장은 학생부학장으로 한다.

- ② 의학과장, 의학교육실장, 의학교육실 소속 교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특별위원으로 학생대표 및 학부모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의과대학 교학팀 학생담당으로 한다.

**제 5 조(위원장 등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 단, 위원장 부재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 6 조(회의의 소집 및 의결)** ①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 7 조(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하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과대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 8 조(보칙)**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